

<붙임8>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유형

□ 그룹별 유형분류

구분		내용	유형번호
진흥지역	경지정리	집단화된 경지정리 진흥구역	1, 29, 30, 31, 32
		집단화 규모 미만 단독 경지정리 진흥구역	3, 34, 35, 36, 37
	미경지정리	집단화된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5, 11, 39, 41
		경지정리 사이, 외곽 미경지정리 진흥구역	(6,7,12,13)번의 하위코드 -6
	도로	도로면적(-12유형)	(2,4,10,16,33,38)번의 하위코드 -12
변경지역 (진흥→보호)		여건변화 분리(3~5ha) 진흥구역	(2+4+10+16+33+38)번의 하위코드 -10,-11
		경지정리 사이, 외곽 미경지정리 진흥구역(5ha 이하)	(6+7+12+13)번의 하위코드 -1, -2, -3, -4, -5
		주변개발 등 단독 3~5ha 경지정리	43
		주변개발 등 단독 3~5ha 미경지정리	44
보호구역		해제지역 제외 보호구역 (도로제외)	51, 51-1, 51-2, 55, 56-10, 56-11, 57, 59, 60-10, 60-11, 61, 62, 62-1, 63-10, 63-11, 65, 66-10, 66-11, 67, 68, 69-10, 69-11, 71, 72-10, 72-11, 73
		도로면적(-12유형)	(56,60,63,66,69,72)번의 하위코드 -12
해제지역		'07, '08년 해제기준 적용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흥 : 8,9,14,15,17,18,19,20,21,23,24,25,26,27,40, 2 -1,-2,-5,-6,-7,-8,-9 4 -1,-2,-5,-6,-7,-8,-9 10 -1,-2,-5,-6,-7,-8,-9 16 -1,-2,-5,-6,-7,-8,-9 22 -1,-2,-5,-6,-7,-8,-9,-10,-11,-12 28 -1,-2,-5,-6,-7,-8,-9,-10,-11,-12 33 -1,-2,-5,-6,-7,-8,-9 38 -1,-2,-5,-6,-7,-8,-9 • 보호 : 52, 53, 54, 58, 64, 70, 74, 75, 76, 77, 56 -1,-2,-3,-5,-6,-7,-8,-9 60 -1,-2,-3,-5,-6,-7,-8,-9 63 -1,-2,-3,-5,-6,-7,-8,-9 66 -1,-2,-3,-5,-6,-7,-8,-9 69 -1,-2,-3,-5,-6,-7,-8,-9 72 -1,-2,-3,-5,-6,-7,-8,-9
		주변 개발 등 단독 3ha이하	42
		도시지역 미경지정리(진흥구역)	(10,16,22,28)번의 하위코드 -14
		자연취락 지구	(2,4,10,16,22,28,33,38,56,60,63,66,69,72)번의 하위코드 -4
		비농지	(2,4,10,16,22,28,33,38)번의 하위코드 -3
		기해제 대상지역	(2,4,10,16,22,28,33,38,56,60,63,66,69,72)번의 하위코드 -13

유형분류표

(진흥구역)

분류Ⅰ	분류Ⅱ	분류Ⅲ	분류Ⅳ	분류Ⅴ	유 형
경지정리(O)	집단화(O)	농 지			1
		불부합지			2
	집단화(X)	일반농지			3
		불부합지			4
경지정리(X)	집단화(O)	용수원(O)	농 지		5
			경지정리외곽		6
			경지정리사이		7
			곡 간 폭		8
			잔 여 지		9
			불부합지		10
경지정리(X)	집단화(O)	용수원(X)	농 지		11
			경지정리외곽		12
			경지정리사이		13
			곡 간 폭		14
			잔 여 지		15
			불부합지		16
경지정리(X)	집단화(X)	용수원(O)	농 지		17
			경지정리외곽		18
			경지정리사이		19
			곡 간 폭		20
			잔 여 지		21
			불부합지		22

분류 I	분류 II	분류 III	분류 IV	분류 V	유 형
경지정리(X)	집단화(X)	용수원(X)	농 지		23
			경지정리외곽		24
			경지정리사이		25
			곡 간 폭		26
			잔 여 지		27
			불부합지		28
밭기반정비(O)	집단화(O)	밭경지정리			29
		용수+경작로			30
		용수개발			31
		경작로개설			32
		불부합지			33
밭기반정비(O)	집단화(X)	밭경지정리			34
		용수+경작로			35
		용수개발			36
		경작로개설			37
		불부합지			38
저수지상류	500m 이내				39
자연마을(10호)					40
경사지개발					41
단독3ha이하					42
단독3~5ha	(경지정리)				43
단독3~5ha	(미경지정리)				44

(보호구역)

분류 I	분류 II	분류 III	분류 IV	분류 V	유 형
저수지상류	500m 이내	직접유역(O)	농 지	경지급수	51
				미경지급수	51-1
		경지정리(O)	농 지		51-2
			도로개설단절		52
			당초자랑불부합		53
		직접유역(X)			54
	500m 이상	경지정리(O)	농 지		55
			불부합지		56
		밭기반정비(O)	농 지		57
		경지정리(X)			58
저수지하류부		경지정리(O)	농 지		59
			불부합지		60
		밭기반정비(O)	농 지		61
		경지정리(X)	농업환경보호(O)	51유형 관련	62
				51-1유형관련	62-1
				불부합지	63
			농업환경보호(X)		64
저수지없는보호	진흥구역 인접	경지정리(O)	농 지		65
			불부합지		66
		밭기반정비(O)	농 지		67
		경지정리(X)	농업환경보호(O)	농 지	68
				불부합지	69
			농업환경보호(X)		70

유형별 세부 현황

<진 흥 구 역>

1. 경지정리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
2. 경지정리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의 **불부합지**
 - 당초 지정오류 및 여건변화에 따라 지정요건이 불합리해진 농지로 코드에 -1, -2등 부번호 부여

·2-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u>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자투리 발생 근거 도로·하천 등은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 기준 적용(이하 동일)
·2-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2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2-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2-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2-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u>하천부지</u> 로 편입된 경우
·2-6 : 진흥지역 <u>외곽 전필지</u> 가 도로 부지인 경우
·2-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DMZ, 지뢰지대, 군사시설 설치지역 내 포함된 진흥지역 포함(이하 동일)
·2-8 : (없음)
·2-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20,000㎡~ 3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2-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30,000㎡~4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2-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40,000㎡~5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2-12 : 도로·철도 등이 <u>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u> 인 경우
·2-13 : <u>혁신도시, 산업단지</u>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2-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3. 경지정리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
4. "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불부합지**

·2-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u>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2-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2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2-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2-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2-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u>하천부지</u> 로 편입된 경우
·2-6 : 진흥지역 <u>외곽 전필지</u> 가 도로 부지인 경우
·2-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2-8 : (없음)
·2-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20,000㎡~ 30,000㎡</u> 로 남아있는 경우

- 2-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2-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2-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5.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

6.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과 접한 외곽 지역

- 6-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6-2 : 해당 지역이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3 : 해당 지역이 20,000㎡~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4 : 해당 지역이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5 : 해당 지역이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7.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에 2방향 이상 접한 지역

- 7-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7-2 : 해당 지역이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7-3 : 해당 지역이 20,000㎡~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7-4 : 해당 지역이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7-5 : 해당 지역이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7-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8.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곡간폭이 100m 이하인 지역

9.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잔여지(경지정리지역과 연결한 1ha미만의 지역)

10.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불부합지

- 10-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0-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0-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10-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10-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10-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10-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10-8 : (없음)

- 10-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0-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0-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0-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10-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10-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11.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

12.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과 연결한 외곽 지역

- 12-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2-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2-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2-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2-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2-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13.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2방향 이상 접한 지역

- 13-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3-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3-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3-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3-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3-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14.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곡간폭이 100m 이하인 지역

15.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잔여지(경지정리지역과 연결한 1ha미만의 지역)

16.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고,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부합지

- 16-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6-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6-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16-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16-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16-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16-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16-8 : (없음)
- 16-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6-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6-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6-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16-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16-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17.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

- 17-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7-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7-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7-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7-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7-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18.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과 접한 외곽 지역**

- 18-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8-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8-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8-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8-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8-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19.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과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에 둘러싸이거나 2방향 이상 접한 지역

- 19-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19-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9-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9-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9-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19-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20.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곡간폭이 100m 이하인 지역

- 21.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잔여지(경지정리지역과 연결한 1ha미만의 지역)
- 22.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된 지역에서 **불부합지**

- 22-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22-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2-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22-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22-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22-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22-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22-8 : (없음)
- 22-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2-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2-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2-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22-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22-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 23.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

- 23-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23-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3-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3-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3-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3-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 24.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과 접한 외곽 지역**

- 24-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24-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4-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4-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4-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4-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25.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지정리 지역에 둘러싸이거나 2방향 이상 접한 지역

- 25-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25-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5-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5-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5-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5-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26.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곡간폭이 100m 이하인 지역

27.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잔여지(경지정리지역과 연결한 1ha미만의 지역)

28.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용수원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서 **불부합지**

- 28-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28-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8-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28-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28-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28-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28-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28-8 : (없음)
- 28-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8-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8-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28-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28-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28-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29.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발두렁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30.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수개발과 경작로 개설을 시행한 지역

31.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용수개발을 시행한 지역

32.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경작로개설을 시행한 지역

33.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 **불부합지**

- 33-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33-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3-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33-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33-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33-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33-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33-8 : (없음)
- 33-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3-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3-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3-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33-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33-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34.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발경지정리를 시행한 지역(발두령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35.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용수개발과 경작로개설을 시행한 지역

36.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용수개발을 시행한 지역

37.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로개설을 시행한 지역

38. 발기반정비가 시행된 지역으로 집단화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불부합지**

- 38-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38-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8-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와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염전·잡종지·임야·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창고용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38-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38-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38-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38-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38-8 : (없음)

- 38-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8-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8-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38-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38-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38-14 : 도시지역중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39. 진흥구역내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 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이내인 지역
- 경계선에 1필지 일부분이 걸친 경우 500m이내 경계선 내측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시는 전체면적을 500m이내로 포함하고, 330제곱미터이하일 경우에는 전필지를 500m이상으로 구분
 - 단, 저수지 상류지역이 경지정리가 안되어 있고, 진흥구역 외곽에 위치하여 직접유역구분이 가능한 지역
40. 자연마을은 1ha이내 가옥이 10호이상(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과 관계없음) 형성된 경우 마을내 농지를 포함
- 가옥이 위치한 필지의 지적경계선에서 인근가옥 지적경계선을 연결하고 경계선내 모든 토지를 포함하여 설정하되 연결한 도로, 하천, 임야경계선을 이용하여 한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41. 경사지 개답으로 필지의 폭이 10m내외인 농지로 구거, 도로 등의 구획선을 경계로 하여 개답 농지를 거쳐 용수를 공급받는 하류부와 개답농지 상류부를 포함한 미경지정리 지역

- 41-1 : 해당 지역이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41-2 : 해당 지역이 10,000㎡~ 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41-3 : 해당 지역이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41-4 : 해당 지역이 30,000㎡~ 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41-5 : 해당 지역이 40,000㎡~ 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41-6 : 해당 지역이 50,000㎡이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42.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ha이하로 남은 경지정리지역
43.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경지정리지역
44. 주변 개발 등으로 단독으로 3~5ha이하로 남은 미경지정리지역

<보호구역>

51. 경지정리지역 및 경지정리+미경지정리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담수지 포함)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 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로 수계가 직접유역인 지역
 - 경계선에 1필지 일부분이 걸친 경우 500m이내 경계선 내측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시는 전체면적을 500m이내로 포함하고, 330제곱미터이하일 경우에는 전필지를 500m이상으로 구분
- 51-1. 미경지정리지역의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담수지 포함)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 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로 수계가 직접유역인 지역
- 51-2.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 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
52.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저수지로 유입되는 유입천과 최상류 유지가 만나는 점) 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로 수계가 저수지로 유입되던 것이 도로개설 등으로 수계가 저수지 직접유역으로 유입되지 않고 단절된 지역
53.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지만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가 진흥지역에 편입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농지 및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지역
54.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내지만 수계가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는 지역
55.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상되는 지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
56.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상 되는 지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불부합지

- 56-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56-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56-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56-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56-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56-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56-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56-8 : (없음)
- 56-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56-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56-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56-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56-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57.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상되는 지역에서 받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

- 코드-1 : 받기반정리를 시행한 농지 (밭두렁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2 : 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3 : 용수개발
- 코드-4 : 경작로개설

58. 저수지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상류로 반경 500m 이상되는 지역에서 경지정리가 미시행된 지역

59.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

60.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불부합지**

- 60-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60-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0-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60-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60-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60-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60-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60-8 : (없음)
- 60-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0-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0-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0-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60-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61.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에서 받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유형별로 코드에 -1, -2등 부번호 부여

- 코드-1 : 받기반정리를 시행한 농지 (밭두렁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2 : 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3 : 용수개발
- 코드-4 : 경작로개설

62. 51유형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미시행되었고 농업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62-1 : 51-1유형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미시행되었고 농업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저수지 하류부 진흥구역 용수공급을 위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용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63.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미시행되었고 농업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농지중 **불부합지**

- 63-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63-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3-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63-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63-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63-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63-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63-8 : (없음)
- 63-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3-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3-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3-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63-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64. 저수지 하류부로서 진흥구역과 연결되는 보호구역으로 경지정리가 미시행되었고 농업환경보호와 관계없는 지역

- 저수지 하류부 진흥구역 용수공급을 위해 별도로 설치된 용수로(수로교 및 용수개거 등)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지

65. 진흥구역과 인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

66. 진흥구역과 인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불부합지**

- 66-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66-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6-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66-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66-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66-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66-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66-8 : (없음)
- 66-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6-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6-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6-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66-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67. 진흥구역과 인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받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

- 코드-1 : 받기반정비를 시행한 농지 (밭두렁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2 : 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3 : 용수개발
- 코드-4 : 경작로개설

68. 진흥구역과 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미시행되었으나, 농업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의 농지

- 농업용수가 개발되었고 용수로가 진흥구역과 연계되어 있는 농지
- 경지정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대별 집단화기준 이하의 토지

69. 진흥구역과 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미시행된 지역으로 **불부합지**

- 69-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 69-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10,000㎡~2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9-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 69-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 69-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하천부지로 편입된 경우
- 69-6 : 진흥지역 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
- 69-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 69-8 : (없음)
- 69-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20,000㎡~ 3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9-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30,000㎡~4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9-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40,000㎡~50,000㎡로 남아있는 경우
- 69-12 : 도로·철도 등이 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
- 69-13 :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70. 진흥구역과 접한 지역(저수지가 없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미시행된 지역으로 농업환경보호와 관계없는 지역
- 71. 진흥구역과 무관하게 동 떨어져 있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
- 72. 진흥구역과 무관하게 동 떨어져 있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역으로 **불부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72-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이하</u>로 남아있는 경우 ·72-2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10,000㎡~20,000㎡</u>로 남아있는 경우 ·72-3 : '92년 당초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용지인 토지로 현재까지 비농지 ·72-4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이 취락지역·산림보전지역·공업지역·관광휴양지역·개발촉진지역 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72-5 : 하천제방의 산개축공사로 인하여 진흥구역이 <u>하천부지로</u> 편입된 경우 ·72-6 : 진흥지역 <u>외곽 전필지가 도로 부지인 경우</u> ·72-7 : 진흥지역에 군부대 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72-8 : (없음) ·72-9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20,000㎡~ 30,000㎡</u>로 남아있는 경우 ·72-10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30,000㎡~40,000㎡</u>로 남아있는 경우 ·72-11 : 도로 개설 등으로 자투리 토지가 <u>40,000㎡~50,000㎡</u>로 남아있는 경우 ·72-12 : 도로·철도 등이 <u>여건변화와 관계없는 (전필지)도로·철도 부지인 경우</u> ·72-13 : <u>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도시계획변경</u> 등으로 농지가 수용되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도면상 진흥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경우

- 73. 진흥구역과 무관하게 동 떨어져 있는 보호구역에 발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로 유형별로 코드에 -1, -2등 부번호 부여

- 코드-1 : 발경지정리를 시행한 농지 (발두렁정비+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2 : 용수개발+경작로개설
- 코드-3 : 용수개발
- 코드-4 : 경작로개설

- 74. 진흥구역과 무관하게 동 떨어져 있는 보호구역에서 경지정리가 미시행된 지역
- 75. 주수원공의 대체개발로 저수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시 개발로 인해 수혜면적이 없어진 저수지 유지 면적
- 76. 보호구역내 자연마을 10호이상(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가옥과 관계없음)이 1ha 범위내에 형성된 경우 마을내 농지를 포함
 - 가옥이 위치한 필지의 지적경계선에서 인근가옥 지적경계선을 연결하고 경계선내 모든 토지를 포함하여 설정하되 연결한 도로, 하천, 임야경계선을 이용하여 한필지가 분할되지 않도록 함
- 77. 저수지중 진흥구역 및 경지정리지역 용수공급과 관계없이 지정된 경지정리 미시행 지역